

2003년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신청요강

2003. 3.

한국학술진흥재단

차 례

I. 사업목적	1
II. 사업내용	1
1. 사업규모	
2. 지원방향	
3. 지원분야 대상 및 조건	
4. 지원규모 및 기간	
III. 공모 및 신청	2
1. 공모방법	
2. 신청방법	
3. 신청자격	
4. 신청 및 참여 제한	
IV. 심사 및 선정	5
1. 심사절차	
2. 심사방법 및 내용	
V. 지원금 지급 및 관리	6
1. 지급방법	
2. 지급시기	
3. 지원비 사용	
4. 지원비 관리	
VI.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7
1. 보고서 제출	
2. 연구결과 사후관리	
3.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VII. 간접연구비지원	9
VIII. 행정사항	9

※ 붙임 : 2003년 신청서식

I. 사업목적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의 연구자 양성 및 대학 교육내용의 균형성 유지

II.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5억원

2. 지원방향

-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와 학문간의 균형발전 도모
 -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분야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 지원
- 여성 신청자 우대 (선정인원의 20% 내외)

3. 지원분야 대상 및 조건

가.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함

-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인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

나. 지원대상 : 보호학문분야에 적격한 전문학자 (신청자격 참조)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조건

- 강의부담금 전액을 지원비에 포함하여 지급함(기관에서는 선정된 강좌의 강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규정된 수 이하의 학생이 강의 신청을 할 경우에도 폐강해서는 안됨

4.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2,460만원

- ※ 강의지원비 연 2,160만원(매월 균등지급), 연구활동비 100만원, 연구기관 지원비 200만원을 연구기관에 지급 (단, 기관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인정됨)

나. 지원기간 : 1년

Ⅲ.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법

- 대학 총(학)장 및 기관장을 통하여 공고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공고
 -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요강 및 신청양식 제공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03. 6. 2. (월) - 6. 7. (토) 18:00 까지
- 서류 제출 : 2003. 6. 12 (목) 18:00까지 도착
- ※ 연구계획서상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함

-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 코너를 통해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포함)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하고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 ※ 학술연구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

나. 온라인 신청

- 연구자가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함
-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시의 입력화면을 온라인 신청기간 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임

다. 접수번호 확인 및 강의·연구계획서 파일

- (1)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후에만 확인할 수 있음
- (2) 강의 및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

- 기간 : 2003. 6. 8(일)부터 2003. 6. 12(목) 18:00까지
- 파일형식 : 한글 또는 MS워드, PDF(여타 형식은 탑재할 수 없음)
- 탑재방법 : 부여된 접수번호를 확인한 후 '탑재' 아이콘을 클릭하여 강의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

라. 서류제출

(1) 제출방법 : 강의·연구계획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강의 개설 확정 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

- 강의 및 연구계획서는 동 사업의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강의 개설예정인 대학에서 수합하여 일괄 신청

- 학과장(1, 2학기 강의배정 포함)의 추천을 받아야 함

※ 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 1년간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할 경우 신청자가 1개 대학을 지정하여 신청

(2) 제출서류

-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신청서 1부 <양식 1>
- 강의(1, 2학기 강의배정 포함) 및 연구계획 추천서 1부 : 학과장 추천<양식 2>
- 미취업 확인서 <양식 3>
- 각종 보험 가입(미가입) 확인서 (선정될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를 기관에서 확인·작성하여 제출) <양식 4>
- 강의 및 연구계획서 7부 <양식 5>, <양식 6>
- 강의경력 증명서 1부(최근 2년간 : 2001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3. 신청자격

- 회귀 학문분야의 전문학자로 신청하는 해당대학의 **2003년 2학기 강의가 확정된 자**

※ 정규직 취업자 제외 (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기 수혜자도 신청가능 함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대우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은 제외

4. 신청 및 참여 제한

가. 신청 제한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함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포함)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2000년 이후 지원과제는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2003년도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과건 수혜자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3.12.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3.12.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 지원 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BK21 사업의 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1인이 2과제까지 참여가능)
- ※ 최종 선정시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지원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선정에서 제외함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 계 별	심 사 내 용	
1 단계	요건심사	신청자격 심사
2 단계	전공심사	보호학문분야의 적격 여부 및 강의·연구계획서
3 단계	종합심의	최종선정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주관 : 재단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 여부 검토

나. 2단계 심사 : 전공심사

- 심사주관 : 패널심사단
- ※ 재단의 위원회와 심사자 Pool을 중심으로 세부 분야별 패널팀을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함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 ※ 패널구성시 대상과제가 3과제 이하이거나 소수분야 및 특수분야의 신청과제에 한하여 우선심사 활용
- 심사내용 :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 강의계획 및 연구계획에 대한 패널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적격심사】

구분	심사항목	적격	부적격	지적내용
보호학문의 적합성	보호학문분야 지원목적에 합당한 분야인가 심사			

※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부적격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심사】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강의내용	강의개설의 필요성	희귀분야 강좌개설 필요성	○ 희귀분야로서 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강의계획서 평가	강의실적	○ 강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가
		강의계획 및 연구계획과의 연관성	○ 강의와 연구가 연관되어 있는가
연구주제	독창성	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
		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을 시도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학문적 가치	○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큰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의 지평을 창출하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교육과의 연관성	○ 연구 결과가 교육내용으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내용 및 실현 가능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적절한가
	선행연구	선행연구의 검토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인용 및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다. 3단계 심사 : 종합심의

- 심의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 심의내용 : 예산 배분 및 지원과제 확정
- 선정원칙 : 2단계 전공심사 결과에 의해 각 분야별 우선순위 및 예산 배정액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V. 지원비 지급 및 관리

1. 지급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2. 지급시기

- 협약 체결 후 일괄 지급

3. 지원비 사용

-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는 강의와 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일괄 지급함
- 지원비 담당부서는 연구자에게 월 단위로 강의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4. 지원비 관리

- 지원비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나, 연구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의 회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비를 지급 받았을 때
 - 강의 및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강의 및 연구기간 중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취업하였을 때 (잔액회수)
 - 해당 대학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1. 보고서 제출

가. 중간보고서

- (1)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 (2) 제출자료
 - 2003년 2학기 강의결과보고서 1부
 - 2004년 1학기 강의개설 확인서 1부
 - 연구진행상황보고서 1부

나. 결과보고서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제출자료

- 연구결과개요보고서 1부
- 연구결과 요약문(국·영문) 1부
- 연구결과보고서 5부 (재단의 소정양식)
- 강의결과보고서 1부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위의 자료는 한글 또는 MS워드 작성하여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비를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포함) 지원에 대하여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절행위 등)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다. 최종연구결과물(게재 논문 또는 저서) 발표

(1) 연구결과물 발표에 대한 책무

최종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2)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

(3)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3-○○○○○○○)”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3-043-○○○○○○○)”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학술 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의 소정평가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 이하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지원포함) 지원을 제한함

2.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유(협약서상 명시)로 함. 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자 간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제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 및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 준용)

3.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등)을 게재하여야 함

VII. 간접연구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이 아님

VIII. 행정사항

- 온라인 신청서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 홈페이지 『연구분야분류표』를 참고하여 심사희망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바람
- 신청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기반조성 1팀

TEL (02)3460-5637, FAX (02)3460-5620

<양식 3>

미 취 업 확 인 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신청자 연락처	자택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 Fax : E-mail :			
내용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양식 4>

2003년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각종 보험 가입(미가입) 확인서

접수번호		과제번호	(미기재)
강좌명	2003년 2학기 강좌명 : 2004년 1학기 강좌명 :		
연구과제명			
신청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
		전화	()
<p>1. 우리 기관에서는 위의 연구자가 2003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것을 확인합니다. ()</p> <p>2. 우리 기관에서는 위의 연구자가 2003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2003. . .</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명 :</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장 : (인)</p>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 1. 상기 확인서의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확인서는 연구 및 강의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하며,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기관에만 기관지원비(200만원)를 지급할 예정임
3.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관지원비(200만원)를 반납하여야 함

<양식 5>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과제번호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비지원 강의·연구계획서
 (사업명 :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강좌명	강좌명 1 (2003년 2학기) : 강좌명 2 (2004년 1학기) :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속 :		

☞ 연구계획서 7부중 겉표지(현재 페이지)는 1부만 붙이고, 나머지 6부는 겉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양식 6>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과제번호	기재하지 마십시오.
--------------	------------

강좌명	2003년도 2학기 강좌명 : 2004년도 1학기 강좌명(예정 : 가변적) :					
강의내용	강의학점		주당 강의시간		강의과목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연구과제명						

I. 강의실적

1. 강의실적

강좌명	강의기관	기간	학점	주당 강의 시간	수강 인원	과목 구분	비고

※ 과목구분은 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중 택일하여 기재

※ 최근 2년간의 강의실적을 기록 (2001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II. 강의 계획

● 강좌 명 :

- 1) 강좌개설의 목적
(보호학문으로서의 강좌개설 필요성)

- 2) 강좌 관련 분야의 국내외 동향

- 3) 강좌 내용 및 방법

- 4)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 계획

※ 별지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로 작성

※ 강의요목(Syllabus)은 필히 별도 첨부

Ⅲ. 연구 계획

◎ 연구과제명 :

1)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설계, 내용, 방법 등의 창의성, 논리성 및 구체성 등)

3) 학문·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및 활용도

(연구주제의 학문발전 공헌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교육과의 연관성 등)

4) 연구계획과 강의계획의 연관성

5) 기타사항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등

6) 참고문헌

(중요 선행연구의 검토,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정성)

※ 별지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로 작성하십시오.